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21

제안연월일 : 2014. 03. .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기존 '연장자'에서 '최다선의원(최다선의원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)'으로 변경 (안 제8조제2항)

3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4조

4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5. 기타 참고자료 : 없음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(생략)	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54조 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 제48조제1항,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의장등의 선거"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